

제30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 
행정·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  
[2024. 1. 31.(수) 10:00]

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2024. 1. 31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·재무위원회

#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4년 1월 31일  
전문위원 장 석 현

## 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024 - 16
- 나. 발 의 자: 정정희 의원 외 5명
- 다. 발의일자: 2024년 1월 22일
- 라. 회부일자: 2024년 1월 22일

## 2. 개정이유

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일몰제를 새롭게 도입하고, 위탁계약 기간을 축소하는 등 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재위탁 관련 용어의 정비(안 제2조)
- 나. 민간위탁 일몰제 도입(안 제5조의2 신설)
- 다. 민간위탁기간 및 연장기간 축소(안 제15조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- 나. 협조부서: 기획예산과
- 다. 입법예고(2024. 1. 22. ~ 2024. 1. 27.)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개정 취지

- 본 개정안은 재위탁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고, 위탁계약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는 한편, 새롭게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일몰제를 도입하여 민간위탁 선정과정 전반에 걸쳐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

### 나. 주요 내용

- 안 제2조의4는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 기간을 연장하는 ‘재계약’ 과 다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‘재위탁’ 을 구분하여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였음

| 현<br>행   | 개<br>정<br>안   |
|--|---|
|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“재위탁”이란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무를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<u>다시</u>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.</p> | <p>제2조(정의) -----<br/>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<br/>-----<br/>----- <u>다시 선정</u><br/><u>하여 위탁</u>-----<br/>-----.</p> |

-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민간위탁 협약 2회차 종료 후 원칙적으로 일몰제를 적용하여 장기위탁 사례를 최소화하고자 함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| <p>제5조의2(민간위탁 일몰제) ① 민간위탁 사무 중에서 민간위탁 협약을 2회차 체결한 사무는 해당 2회차 협약의 위탁기간이 종료된 후 일몰제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계속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무는 적정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차와 관계 없이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.</p> |

- 안 제7조 2항의 단서를 개정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기존 ‘10년 경과’ 에서 ‘6년 경과’ 후 의회의 재동의를 받도록 기간을 단축하여, 무분별한 민간위탁 사업의 장기화를 방지하고자 함
- 안 제8조에 9호를 신설하여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사항에 성과 보고서를 추가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

- 안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하였으며,
- 안 제12조 2항에서는 적격자 심사위원 구성 시 구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3분의 2 이상으로 하도록 하여,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음
- 안 제15조의 경우 2항 개정을 통해 위탁기간과 연장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여 민간위탁 진입 규제를 완화하였음. 다만,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90일의 범위에서 일시 연장할 수 있도록 4항을 신설하여 사무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고려함
- 안 제22조 4항을 신설하여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지도 및 점검·감사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였고,
- 안 제25조의2(인센티브 및 페널티)를 신설하여 수탁기관 종합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

#### 다. 종합 의견

- 본 개정안은 위탁계약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는 등 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걸쳐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

- 신규 수탁을 활성화하고자 의회의 동의 기간을 단축하고, 민간위탁 성과보고서 및 지도점검 결과 등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
- 또한,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구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규정하여 수탁자 선정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
- 이와 함께 위탁 및 연장 기간을 축소하여 민간위탁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, 기존 위탁사업 종합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근거를 신설하여 민간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음
- 본 개정안을 통해 민간위탁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어 신규 수탁을 활성화하고, 일몰제를 도입하여 장기위탁 사례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적합한 개정안이라 판단됨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